

창원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1161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나116109 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1202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오성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2024. 7. 26.

판결 선고2024. 10. 11.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1202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2. 2.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1) 제1심에서의 피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이진석

판사김상욱

별지

1) 피고의 2023. 10. 31.자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로 이 사건 채무자인 C의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필요한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후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준비서면이나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